

인천광역시관광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2. 3(수)

문교사회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9. 11. 24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09. 11. 24

라. 상정일자 : 2009. 12. 18(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문교사회위원회)

○ 제안설명 :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 검토보고 : 문교사회전문위원 유한경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보류

【2010. 2. 1 (제180회 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관광도시 인천의 국제인지도 향상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증진 도모를 위하여 공사의 수권자본금과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사 사업범위 확대에 따른 수권자본금 확대(안 제4조)
- 「지방공기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장·이사·감사의 임기를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장·상임이사를 임명하는 경우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조항 정비(안 제7조 부터 안 제9조까지)
- 공사의 사업에 교육분야와 관광숙박업을 추가함(안 제19조)
- 손익금의 처리 중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익을 배당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2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취지

- 인천광역시관광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의 사업범위 확대를 위해 수권자본금의 증액과 2009. 9. 21. 일부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임.

□ 주요내용

- 약칭 조정(안 제1조)
 - 일반적으로 약칭은 목적조항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안 제1조 목적조항에서 사용한 약칭을 삭제하고, 제2조 및 제19조 제1항 제12호를 개정하였음.
- 수권자본금 증액(안 제4조)
 - 안 제4조 제1항에서 수권자본금을 3,600억원에서 6,500억원으로 2,900억원 증액하였음. 수권자본금은 관광공사에서 운용할 수 있는 총

자본금의 규모로, 市에서 출자하고자 할 경우, 수권자본금의 범위내에서 출자할 수 있음.

- 2009년 현재 인천관광공사의 수권자본금 3,600억원 중 市에서 출자한 납입자본금은 현금 267억원, 현물 1,561억원 등 총 1,828억원으로, 市의 공사에 대한 잔여 출자한도는 1,772억원임.

< 市의 관광공사에 대한 출자현황 >

(단위 : 억원)

년도별	합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 계	1,828	10	334	1,120	260	104
현 금	267	10	45	20	88	104
현 물	1,561	-	289 ◦ 시티은행, ◦ 사회복지회관 ◦ 도시관광주식	1,100 송도호텔부지	172 아쿠아리움부지	-

-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U-City 사업과)에서 인천시 산하 4개 공사를 대상으로 한 2010년 이후 Tomorrow-City 운영사 선정 결과, 인천관광공사가 선정됨에 따라 市에서는 2010년도에 Tomorrow-City (2,399억원) 및 인천 해양과학관 및 홍보관 부지(121억원), 무의아트센터 건립부지(18억원) 등 총 2,538억원 상당의 현물을 출자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음.
- 관광공사에서 이를 출자 받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권자본금의 증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나, 상기 출자대상 현물가격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산출한 개략적인 금액으로, 출자 전에 실시하는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출자금액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임.

- 참고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에서는 공사에서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규모를 순자산(자산총액 - 부채총액)의 4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광공사의 사채 발행한도도 대폭 확대된다고 볼 수 있음.

○ 임원의 연임 및 임명조건 개정(안 제7조 ~ 제9조)

-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제7조에서는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8조에서는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였음.
- 안 제9조 제1항에서 “비상임 이사에는 시의 실·국장과 세무 또는 회계분야와 관광분야 전문가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문은 市の 모든 실·국장이 당연직 비상임 이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 현재 인천관광공사 정관 제10조 제1항에서는 당연직 비상임 이사에 市の 관광업무 담당국장, 도시계획업무 담당국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개정안에서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된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6항에서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 제9조에서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9조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개 정 안	수 정 안
<p>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 이사에는 <u>시의 실·국장</u>과 세무 또는 회계분야와 관광분야 전문가를 포함한다.</p> <p>② <u>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 이사에는 <u>시의 관광업무 담당 국장 및 도시계획업무 담당국장</u>과 세무 또는 회계분야와 관광분야 전문가를 포함한다.</p> <p>② <u>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 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 이사회 운영규정 삭제(안 제14조)

- 안 제1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삭제한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62조1)에서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기에 이를 삭제한 것임.

○ 관광공사의 사업(안 제19조)

- 안 제19조 제1항 제4호에 관광공사에서 행하는 사업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을 신설하였음.
- 이는 현재 관광공사에서 송도파크호텔 및 송도메트로호텔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21조 제1항2)에 따라

1) § 지방공기업법

- 제62조 (이사회)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02.3.25>
 ③이사회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 인천광역시세 감면 조례

- 제2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관광공사의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등은 취·등록세의 면제가 가능함에도, 현행 조례에 관광숙박업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동 호텔의 취득시 세제 감면 논란이 있었던 바, 조례안에 관광공사에서 행하는 사업에 명확히 규정하므로써, 향후 다른 호텔 및 휴양 콘도 미니엄 등 관광숙박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같은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 손익금의 처리(안 제26조)

- 안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 이익배당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음
-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제1항3)의 규정에 따라 이익이 생긴 때에는 ① 이월결손금 보전, ② 준비금 적립, ③ 이익 배당, ④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등의 순서로 이익금을 처리하도록 규정함에 따른 것임.

○ 이 밖의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어문규정에 따라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고, 띄어쓰기 등을 실시한 사항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

○ 김용근, 이명숙, 최만용, 박창규, 오홍철, 정종섭 의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전동차(「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인천메트로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이를 적립한 후 잉여가 생긴 때에는 이익을 배당하고 잔여금액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립할 수 있다.

- 본 조례안이 시급한 것인지? 중요한 조례안이라면 관광공사 사장께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할 사안임
- 관광공사에서 호텔 매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관광공사 사업에 관광숙박업을 신설하는 이유?

< 답 변 >

○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

- 현재 경제청에서는 송도 투모로우시티를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 이를 출자받기 위해서는 수권자본금의 증액이 이루어져야 함.
- 현재 관광공사에서 무의아트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곳에 게스트하우스가 조성되는 것에 대한 대비와, 앞으로 관광공사의 사업 확장을 위한 조치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 음

나. 반 대 : 김용근, 이명숙, 최만용, 박창규, 오홍철, 정종섭 위원

6. 수정안 요지

- 안 제9조 제1항 중 “시의 실·국장”을 “시의 관광업무 담당국장 및 도시 계획업무 담당국장”으로 수정
- 안 제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 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전원찬성 : 6명)

8.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관광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관광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관광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1항 중 “시의 실·국장”을 “시의 관광업무 담당국장 및 도시계획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 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9조 (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 이사에는 <u>시의 실·국장</u>과 세무 또는 회계분야와 관광분야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외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u>3분의 1</u>미만으로 한다.</p>	<p>제9조(이사) ① ----- ----- ----- ----- <u>시의 실·국장</u> ----- ----- ----- 포함한다.</p>	<p>제9조(이사) ① ----- ----- ----- ----- <u>시의 관광업무 담당국장 및 도시계획업무 담당국장</u> ----- ----- ----- 포함한다.</p>
<p>②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 이사는 시장이 임명하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관광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관광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지방공기업법」”으로, “인천광역시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인천광역시관광공사”로 한다.

제2조 중 “공사”를 “인천광역시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3,600억원”을 “6,500억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연임”을 “1년을 단위로 연임”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의거 추천된 자”를 “영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시의 실·국장”을 “시의 관광업무 담당국장 및 도시계획업무 담당국장”으로, “포함하고, 사외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3분의1미만으로 한다”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 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마목 중 “훈련”을 “교육훈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법”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여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와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광숙박업

제20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5조 제목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계리”를 각각 “회계처리”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부채상환, 사업준비 등을 위한”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채상환·사업준비 등을 위한 적립금으로”로 하여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익배당(시 일반회계에 납입)

제5조제1항제14호·제19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4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 각 호외의 부분·제19조제1항제11호(종전의 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 「지방공기업법」----- -----인천광역시관광공사----- -----</p>
<p>제2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p>	<p>제2조 (법인격) 인천광역시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p>
<p>제4조 (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3,600억원으로 하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생략)</p>	<p>제4조 (자본금) ① ----- 6,500억원----- ----- 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 (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13. (생략) 1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생략)</p>	<p>제5조 (정관) ① ----- ----- 1.~13. (현행과 같음) 14. 그 밖에 ----- 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 (등기) ① (생략) ② 공사의 설립등기와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6조 (등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그 밖에 -----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p>
<p>제7조 (임원) ① (생략) ② 사장·이사·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p>	<p>제7조 (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1년을 단위로 연임----- -----</p>

현행	개정안
<p>제8조 (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인천광역시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의거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p> <p>②·③ (생략)</p>	<p>제8조 (사장) ① ----- ----- 영 제56조의3 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 된 자 ----- ②·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 (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 이사에는 시의 실·국장과 세무 또는 회계분야와 관광분야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외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3분의 1미만으로 한다.</p> <p>②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생략)</p>	<p>제9조 (이사) ① ----- ----- 시의 관광업무 담당국장 및 도시계획 업무 담당국장 ----- ----- 포함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 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 (임기만료 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 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제11조 (임기만료 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 ----- 각 호 ----- ----- ----- ----- 1. 2. (현행과 같음)</p>
<p>제14조 (이사회) ①·② (생략)</p> <p>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른 상임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상임이사가 없을 경우에는 선임 비상임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제14조 (이사회)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p>

현행	개정안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삭제>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제>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 (사업) ① 공사에서 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제19조 (사업) ① ----- -----
1. 관광자원개발과 운영 사업 가.~다. (생략) 라. <u>기타</u> 관광객 이용 편의시설 개발 2. 특수관광 시설개발과 운영 사업 가.~다. (생략) 라. <u>기타</u> 문화예술등과 연계한 관광 여가 시설 3. 관광진흥사업 가.~라. (생략) 마. 관광인력의 양성과 <u>훈련</u> 바. (생략)	1. ----- 가.~다. (현행과 같음) 라. <u>그 밖에</u> ----- 2. ----- 가.~다. (현행과 같음) 라. <u>그 밖에</u> ----- ----- 3. ----- 가.~라. (현행과 같음) 마. ----- <u>교육훈련</u> 바. (현행과 같음)
(신설)	4. 관광숙박업
4. 국제회의업	5. -----
5. 체육시설업	6. -----
6. 항공관련 사업	7. -----
7. 남북관광교류에 관한 사업과 협력·지원	8. -----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9. ----- -----
9.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10. ----- -----
10. 위 각호의 업무와 관련한 설계용역과 감리 등의 업무	11. --- <u>각 호</u> ----- -----
11. 기타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등	12. <u>그 밖에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u> -----

현행	개정안
<p>②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 외에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한도는 영 제47조의2 규정에 따른다.</p>	<p>② ----- <u>각 호</u>----- ----- ----- -----</p>
<p>제20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u>기타</u>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수탁계약에 의한다. ②·③ (생략)</p>	<p>제20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 ----- <u>그 밖의</u> --- ----- ----- 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4조 (경비의 부담) ①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u>기타</u>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 (생략) ③ <u>기타</u> 사업자의 대행사업 경비의 부담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p>	<p>제24조 (경비의 부담) ① ----- ----- ----- ----- ----- 1.·2. (현행과 같음) 3. <u>그 밖에</u> ----- ----- ② (현행과 같음) ③ <u>그 밖에</u> ----- -----</p>
<p>제25조 (<u>계리</u>의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와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u>계리</u>한다.</p>	<p>제25조 (<u>회계처리</u>-----) ① ----- ----- ----- ----- <u>회계처리</u>-----</p>

현행	개정안
<p>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p>	<p>② ----- 회계처리----- -----</p>
<p>제26조 (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리한다.</p> <p>1.·2. (생략) <u>(신 설)</u> <u>3. 부채상환, 사업준비 등을 위한 적립</u></p> <p>② (생략)</p>	<p>제26조 (손익금의 처리) ① ----- -----</p> <p>1.·2. (현행과 같음) <u>3. 이익배당(시 일반회계에 납입)</u> <u>4.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채상환·사업준비등을 위한 적립금으로</u> --- ② (현행과 같음)</p>
<p>제34조 (감독) ① (생략) ②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1.~3. (생략) <u>4. 기타</u>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34조 (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 -----</p> <p>1.~3. (현행과 같음) <u>4. 그 밖에</u> -----</p>